

거주자 권리 장전

거주자 권리 장전

3 (1) 장기 요양원의 모든 면허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거주자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고 증진되도록 보장한다.

존중받을 권리

1. 인종, 조상, 출신지, 피부색, 민족적 기원, 시민권, 신념,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나이, 결혼 여부, 가족 상태나 장애를 막론하고 모든 거주자에게는 예의와 존중 및 거주자 고유의 존엄성, 가치, 개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2. 모든 거주자에게는 자신의 생활 방식과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거주자에게는 의사결정 참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대 및 방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4. 모든 거주자에게는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5. 모든 거주자에게는 면허 소지자 및 직원에 의한 방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최적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

6. 모든 거주자에게는 비밀리에 의사소통하고, 원하는 방문자를 맞이하며, 간섭 없이 누구와도 개인적으로 상담할 권리가 있다.

7. 모든 거주자에게는 우정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장기 요양원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모든 거주자에게는 적절한 여건 하에서 상호 희망에 따라 다른 거주자와 방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9. 모든 거주자에게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방에서 자신의 배우자나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다.
10. 모든 거주자에게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영적 및 기타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면허 소지자로부터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 모든 거주자에게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
12. 물리적 환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거주자에게는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해 야외 보호 구역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13. 안전 요건과 다른 거주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모든 거주자에게는 개인 소유물과 그림 및 가구를 자신의 방에 보관하고 전시할 권리가 있다.
14. 법적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거주자에게는 자신의 재정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15. 모든 거주자에게는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요양 생활의 질과 자기 결정권

16. 모든 거주자에게는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 적절한 숙소, 영양, 돌봄 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17. 모든 거주자에게는 거주자를 직접 돌보는 사람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들을 권리가 있다.

18. 모든 거주자에게는 치료와 개인적 돌봄 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9. 모든 거주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i. 돌봄 계획의 수립, 시행, 검토 및 수정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할 권리
 - ii. 법률에 따라 자신의 동의가 필요한 치료, 돌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의 또는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고 이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
 - iii. 요양원 입소, 퇴소 또는 다른 장기 요양원으로의 전출입을 비롯한 요양원의 모든 측면에 관한 의사 결정에 전적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소견을 구할 권리
 - iv. 2004년 제정된 *개인 건강 정보 보호법(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의 맥락과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치료 계획을 비롯한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 기록에 접근하며, 동일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를 기밀로 유지할 권리
20. 모든 거주자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웰빙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간병인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안전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간병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21. 모든 거주자에게는 요양원의 면허 소지자나 직원과의 회의에 친구나 가족, 간병인 또는 기타 거주자에게 중요한 사람이 참석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22. 모든 거주자에게는 거주자 자신의 이송이나 입원에 관한 정보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해당 정보를 즉시 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23. 회복적 돌봄의 철학에 따라 모든 거주자에게는 가능한 한 자립성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4. 해당 법률로 규정된 제한적 상황과 요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거주자에게는 제지 (restrained)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참고: 부총독의 포고로 지정되는 날짜를 기하여 법률 제 3 조 (1)항 24 조의 "제지받지(restrained)"를 삭제하고 "제지 또는 감금(restrained or confined)"로 대체된다. (참조: 2021, c. 39, Sched. 1, s. 203 (3))

25. 모든 거주자에게는 완화 치료의 철학에 따른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6. 사망이 임박하거나 중병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는 가족과 친구를 하루 24 시간 내내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보 취득, 참여 및 불만 제기의 권리

27. 모든 거주자에게는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또는 정책 및 불만 제기 절차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28. 모든 주민에게는 주민 협의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9. 모든 거주자에게는 요양원이나 타인으로부터의 간섭이나, 강요, 차별 또는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정책 및 서비스와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고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i. 주민협의회.

ii. 가족협의회.

iii. 면허 소지자, 면허 소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 및 임원, 파트 IX(Part IX)에 따라 승인된 주택의 경우 섹션 135 에 따른 주택 관리 위원회 위원회나 섹션 128 또는 132 에 따른 주택 관리 이사회.

iv. 직원

v. 정부 공무원

vi. 장기 요양원 내부 또는 외부의 누구나